

의안번호	제430호
의결 연월일	2023년 10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이태훈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10월 4일

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이태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0월 4일

발 의 자 : 이태훈, 노금식, 최정훈,
김성대, 오영탁, 이옥규,
임영은

1. 개정이유

- 포상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 수여 자격 미달자에 대한 표창 제한 조문을 신설하고,
-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포상 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정비(안 제10조제3항)
- 포상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 제한 조항 신설(안 제12조)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받은 자에 대한 취소 조항 신설(안 제13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
- 에 의한 → 에 따른

- 약칭사용 :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
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
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라 한다)
- 각호의 1 → 각 호의 어느 하나
- 자 → 사람
- 기타 → 그 밖의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상훈법」, 「상훈법 시행령」, 「정부표창규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인사혁신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2023.10.5. ~ 2023.10.10

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포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자치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, 충청북도민(외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. 다만,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.

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.

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, 감사장,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 다만,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.

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
1.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2.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
3.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

제6조(감사장)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.

제7조(상장)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
1. 각종 품평회, 경진회,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
2. 학술, 예술,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
3.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

제8조(모범공무원 포상)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.

1.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
2. 도민의 소득증대, 지역사회개발,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

제9조(포상방법 및 부상) ① 포상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표창장, 감사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상금, 상패,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제10조(포상절차)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할 필요가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·국·본부·원장, 산하기관의 장 및 시장·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.

③ 표창장은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)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

천의 적정성,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공적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.
- ③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행정운영과장 또는 인사혁신과장이 된다.
- ⑤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2조(표창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.

- 1.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「지방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2. 재직 중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」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3.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
- 4.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
- 5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
- 6.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(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). 다만,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7. 그 밖에 도지사가 표창계획에 표창금지 대상으로 정한 사람
제13조(포상취소) ①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, 표창장, 감사장 또는 상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·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.

1.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2.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
3.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·제출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. 다만,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4조(포상시기)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
제15조(이중 포상금지)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
제16조(포상대장의 등재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제 호	표	창	장
		주소 또는 소속	직 성명
	(표	창	문)
	년	월	일
충청북도지사	○	○	○ ㉠

[별지 제2호서식]

제 호	감	사	장
		주소 또는 소속	직 성명
	(감	사	문)
	년	월	일
충청북도지사	○	○	○ ㉠

[별지 제3호서식]

제 호	상	장	
○ 상		주소 또는 소속	
		직 성명	
	(상	문)	
	년	월	일
충청북도지사	○	○	○ ㉠

공 적 조 서

(1)성 명		(한 자)	
(2)생년월일		(3)군번 (군인의 경우)	
(4)성 별		(5)국적 (외국인의 경우)	
(6)주 소			
(7)직 업		(8)소 속	
(9)직 급		(10)직 위	(11)대외직명
(12)근무기간		(13)공적분야	
(14)공적요지(50자 내외)			
(15) 추천훈격		(16) 추천순위	
조 사 자			
(17)소 속		(18)직 위	
(19)직 급		(20)성 명	
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추 천 관		(인)	

주요 학력 및 경력

(21) 년 월 일	(22) 이 력	(23) 년 월 일	(24) 이 력

과거 표창기록 (훈장.포장.표창별로 기록)

(25) 년 월 일	(26) 내 용	(27) 년 월 일	(28) 내 용

(29) 공 적 사 항

[별지 제5호서식]

포 상 대 장

호 수	포년 월 상일	포상 종별	포상 기관	피 포 상 자					포상을 하계 공개 된 적 요	기념 품 또 는 상 부	참 고
				직 또 직	위 는 명	소 또 주	속 는 소	성 별			

(포상대장은 표창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.)

관련법령 발취

□ 「상훈법」

제7조(서훈의 확정)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대상자를 결정한다.

제8조(서훈의 취소 등)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,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.

1.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2.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(敵對地域)으로 도피한 경우
3.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,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□ 「상훈법 시행령」

제3조(서훈의 추천) ②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(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)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서훈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

제10조(서훈의 취소)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 없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 추천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,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□ 「정부 표창 규정」

제8조(추천절차)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할 때 「상훈법 시행령」(이하 “법 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공적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사를 거쳐 표창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(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)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상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, 표창 대상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.

1.~2. 생략

제18조(표창 취소의 절차)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(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(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)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9조(표창의 취소)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,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.

제20조(표창 취소의 공표)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.

제21조(표창 등의 환수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·상장, 수장·수치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·금전 등 부상(이하 “표창등”이라 한다)을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창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표창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
제23조(공적심사)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기관공적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기관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③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조례 운영에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구 삭제 및 표창제한, 포상취소 조문을 신설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, 의안의 내용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